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결정 전(前)과 후(後)

【 편집자 주 】

지난 12.7.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각 이해집단간 첨예하게 대립하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렸다. 처음 실시되는 첫째 시험인 2012년에 한해 정원대비 75%이상 합격률을 보장하고(다만,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운영을 전제), 2013년 이후 합격률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1기 로스쿨생들은 한결 안정된 제도의 틀속에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2기 로스쿨생들부터는 다시 합격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정방법에 대한 핵심내용은 몇 퍼센트를 합격시킬 것인지에도 있지만, 좀 더 들여다 보면, 정원대비로 할 것인지, 응시인원대비로 할 것인지, 누적합격률로 할 것인지도 문제인데, 이에 관해서는 아래 김성욱 판사(서울고등법원)의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위 결정이 있기 전후 관련 내용들을 아래에 소개한다.

I.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결정방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2010년 11월 25일)

법무부는 지난 11.25.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정환(변호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애초에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합의된 1,000명 정도의 선에서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 논거로서 OECD 선진국가들과의 단순비교는 무리라는 점, 변호사 수임건수 급감 등의 송무사건 시장의 포화상태라는 현실

적 문제점, 송무 이외의 변호사 직역확대의 어려움, 유사법조직역을 포함할 경우 변호사직역의 과잉공급에 따른 부작용 등을 주장함

2. 장재욱(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 여부의 판단을 위한 시험이란 점(변호사시험법 제10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제15조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점, 정원제한을 해놓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숫자까지 자유경쟁의 원리에 역행하는 조치를 하는 것은 논리모순이라는 점, 주요국가와의 1인당 변호사 숫자의 비교를 통해서도 엄격한 합격자숫자의 제한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논거로 응시자대비 최소 80% 이상으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맞추어 한다고 주장함

3.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어떤 경우에도, 변호사들의 경쟁,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서 결정되는 수급조절용 시험이어서는 안된다는 점, 변호사시험은 경력 5년, 10년 정도의 변호사라면 갖추어야 할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라 '신참 변호사'가 갖추면 될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이면 충분하다는 점, 변호사 시험을 통해 자질을 검증할 게 아니라 로스쿨 교육을 강화해서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점 등을 논거로 위 장재욱(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발표자와 기본적인 합격률에 관한 의견에 동의함

4. 서경진(변호사)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실무수습 2년을 전제로 '입학정원'의 50%정도를 합격시켜야 하고, 합격률을 정함에 있어서는 '응시자' 기준이 아니라 '입학정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논거로서 80%를 주장하는 것은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인 변호사시험을 무의미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점, 현재 로스쿨 교육의 현실이나 중도탈락자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입학정원의 최소 30%이상은 로스쿨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충실히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제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은 있으나, 법조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정책판단 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함

5. 김성욱 판사(서울고등법원)¹⁾

(1) 정원대비 합격률에 따른 합격자 결정방법의 문제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로스쿨 정원의 몇 퍼센트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정원 대비 합격률 주장은,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변호사 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 대비 합격률 산정 방법은 시험 실시 2~3년만 지나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 대비 70%인 1,400명을 매년 합격시킬 경우 세 번째 시험에서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44%²⁾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32%³⁾를 유지하게 됩니다. 정원 대비 80%인 1,600명을 매년 합격시킬 경우에는 세 번째 시험에서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7%⁴⁾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44%⁵⁾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로스쿨과 로스쿨생들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2) 응시자 대비 합격률에 따른 합격자 결정방법의 문제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응시자의 몇 퍼센트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 주장은, 합격률에 따라서는 로스쿨 졸업생을 모두 합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다른 표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내 5회의 응시가 가능한 현행 제도상, 매년 응시자의 80%를 합격시킬 경우, 다음과 같이 이론적으로는 5차례의 시험을 통하여 같은 해 졸업한 로스쿨생 2,000명 대부분이 변호사가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 초시(初試)⁶⁾ 합격률과 재시(再試)⁷⁾ 이후의 합격률이 80%로 같을 경우
3년간 누적 합격률 : 99%⁸⁾, 5년간 누적합격률 : 100%⁹⁾
- 재시(再試) 이후의 합격률이 초시(初試) 합격률(80%)의 절반인 경우¹⁰⁾

1) 아래 글은 2010.11.25. 변호사시험 합격자결정방법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성욱 판사(서울고등법원)의 지정토론문 중에서 정원대비 합격률, 응시자대비 합격률, 누적 합격률 등에 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를 옮긴 것입니다.

2) $1,400 \div (6,000 - 1,400 \times 2) \approx 43.8\%$

3) $1,400 \div (10,000 - 1,400 \times 4) \approx 31.8\%$

4) $1,600 \div (6,000 - 1,600 \times 2) \approx 57.1\%$

5) $1,600 \div (10,000 - 1,600 \times 4) \approx 44.4\%$

6) 로스쿨 졸업 후 처음 치르는 변호사시험

7) 로스쿨 졸업 후 두 번째 치르는 변호사시험

8) $(1,600 + 320 + 64) \div 2,000 \approx 99.2\%$

9) $(1,600 + 320 + 64 + 12 + 3) \div 2,000 \approx 100\%$

10) 참고로 미국의 경우 재시(再試) 이후의 합격률이 초시(初試) 합격률의 절반에 약

3년간 누적 합격률 : 93%¹¹⁾, 5년간 누적합격률 : 97%¹²⁾

이런 결과가 바람직한 것인지, 변호사시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이 용인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3) 누적합격률 또는 최종탈락률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함에 있어, 로스쿨 졸업하고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논의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이른바 누적합격률 또는 최종탈락률 문제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원 대비 70%가 최종적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경우 최종탈락률은 30%가 되어, 2016년부터는 매년 600명이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가 될 수 없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아들이 누적되면 또 다른 사회불안 요인이 생길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최종탈락률을 무조건 낮추는 것도 곤란합니다. 자격시험 제도의 본질상 일정한 자격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합격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 최소한 어느 수준의 능력을 요구할지와 관련하여, 로스쿨 졸업생 중 최종적으로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인원 비율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나아가 변호사가 되지 못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어떠한 삶의 방식들을 제시해 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II. 로스쿨 재학생 3000 여명, 정원제 반발 집단 항의집회 가져(2010년 12월 6일)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결정할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기 하루 전인 12.6. 전국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들이 조건부 집단자퇴서(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기존 사법시험처럼 정원제 선발방식으로 결정돼 정상적인 로스쿨을 이수한 사람이 합격을 장담할 수 없다면 로스쿨을 자퇴하겠다는 내용)를 제출하고, 재학생 3000여명이 넘게 참가한 항의집회를 과천 정부중합청사 앞에서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주장된 주요 내용은 ‘정원제로 하는 것은 과거 사법시험으로의 회귀로서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것’, ‘변호사는 시장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 ‘정원제 도입은 일본 로스쿨 실패를 답습하는 것’, ‘더 많은

간 미치지 못합니다(2009년 기준 초시(初試) 합격률 79%, 재시(再試) 이후의 합격률 33%, 전체 합격률은 68%).

11) $(1600\text{명} + 160\text{명} + 96\text{명}) \div 2,000\text{명} \approx 92.8\%$

12) $(1600\text{명} + 160\text{명} + 96\text{명} + 57\text{명} + 34\text{명}) \div 2,000\text{명} \approx 97.4\%$

변호사, 더 좋은 법률서비스' 등이다. 이날 로스쿨 학생대표(김형주, 로스쿨학생협의회 회장, 제주대 로스쿨)는 박순철 법무부 법조인력정책 과장에게 이 같은 주장 내용을 전달하고, 로스쿨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호사시험제도가 결정되면 동맹휴업이나 기말고사 거부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III.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관련 성명서(2010년 12월 8일)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2012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에 대하여 어제 법무부가 로스쿨 입학정원의 75%로 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변협은 당초 현재와 같이 사법시험이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병존하는 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30%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로스쿨 도입의 취지와 정부 방향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백보 양보하여 50%안을 내어놓았던 것인바, 더 나아가 75%안을 결정한 법무부의 이번 방침은 심히 유감스럽다.

로스쿨 입학정원 2,000여 명을 기준으로 할 때 당장 1년 뒤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될 학생 수가 약 1,500명이고, 로스쿨 졸업자 외에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게 되는 신규변호사 수만 1,000명이다. 따라서 2012년 한 해에만 2,500명의 신규변호사가 배출되는 셈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250%의 증가율이다. 신규변호사 2,500명이란 숫자는 2010년 말 현재 전국의 모든 개업 변호사 수 11,000명의 23%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어느 문명국가에서 변호사 선발 인원수를 한 해에만 기존의 전체 변호사 수의 23%씩 늘린단 말인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평균 인구증가율은 0.44%, 평균 경제성장률은 3.51%이다. 법률시장의 수요 규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총 인구 및 경제성장 여건은 0.44 ~ 3.51% 수준으로 증가하였는데, 신규변호사 수를 1년 만에 23%로 늘리게 되면 법률시장은 물론이고 신규변호사들조차 일대 취업난, 대량 실업 사태 등 대공황 사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 로스쿨과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젊은 변호사들이 취업난에 빠져 거리를 헤매면 어떤 사태가 올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변호사 수가 늘면 변호사의 수입료가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마치 금융기관을 늘리면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학원 수를 늘리면 학원 수업료가 저렴해질 것이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시장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주먹구구식 논리이며 막연한 환상이다. 미국과 대비하여 변호사 수를 논하는 것도 미국과 한국의 법률문화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한 억지이다. 변호사 수를 늘리는 데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시장에 대한 판단과 합리적 근거도 없이 로스쿨 입학 정원의 75%라는 식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로스쿨을 변호사 양성 수단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스쿨을 양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호사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는 로스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매우 중요한 사법제도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로스쿨 학생들의 집단자퇴와 같은 여론몰이 또는 이를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에서 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법무부는 ‘로스쿨 입학정원 75% 합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0. 12. 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평 우